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



적용기간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5. 7. 1.] [기획재정부고시 제2025-29호, 2025. 7. 1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(계약정책과), 044-215-5213, 5217, 521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.)」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례 적용기간) 영 제27조제3항, 제37조제1항, 제50조제1항, 제52조제1항, 제55조제1항,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25-29호,2025.7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